

정 관

제정 2002. 01. 31. (시행 2002. 03. 25)
개정 2005. 02. 24. (시행 2005. 03. 21)
개정 2007. 02. 08. (시행 2007. 02. 28)
개정 2009. 01. 30. (시행 2009. 02. 28)
개정 2009. 11. 10. (시행 2009. 11. 27)
개정 2014. 02. 20. (시행 2015. 06. 15)
개정 2020. 03. 27. (시행 2020. 07. 1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언론의 취재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보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한 언론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조 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에 관한 사업
3. 미디어이용자의 권리 확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미디어관련 법제의 연구 및 조사, 학술, 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위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출판·홍보에 관한 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이익의 제공)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수익사업)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얻은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제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3.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이사회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이사 10인 이상 30인 이하(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③ 이사가 결원으로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정기총회에서 신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1. 현역 정치인
 2. 현업 언론인 및 언론사 임원(단,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제외)
 3. 현직 공직자(단, 교육공무원은 제외)
- ④ 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 당연히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포기 또는 해태하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및 이사는 각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이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이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정부기관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포함한 전자적 통신수단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9. 기타 이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0.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서면 등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항의 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포함한 전자적 통신수단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 (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 혹은 보고할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0. 이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재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명 예 이 사 장 등

제31조 (명예이사장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 자문기구로 이사회 동의를 얻어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명예이사장은 직전 이사장에 한해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명예이사장 및 명예이사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2조 (고문 등) ① 이 법인은 이사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 (운영위원회) ①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본 부 및 위 원 회

제34조 (본부 및 위원회) ① 이 법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직속 하에 아래의 본부를 둔다.

1. 미디어피해구조본부

2. 정보공개운동본부
3. 미디어이용자권익본부
4. 미디어인권교육본부

② 이사회는 이 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장 직속 하에 제1항 이외의 본부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본부와 위원회에는 본부장과 위원장, 부분부장과 부위원장, 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 및 실무간사를 둘 수 있다.

④ 본부장과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본부장과 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본부와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 장 사 무 처

제35조 (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은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 산 과 회 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로 제공·기타 처분 또는 보통재산으로 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이 법인이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 (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차입금)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예산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 (결산)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45조 (법인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소관정부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소관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업무보고 등) 본회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소관정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0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이사회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4조 (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인 창립당시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생략)

제5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생략)

부 칙 <2007.02.08>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해당연도의 정기총회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제16조 제1항은 이 정관의 개정 후 최초로 선출된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2020.03.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발기인 및 임원 출연금		50,000,000원	
동산 소계		50,000,000원	
토지			
건물			
부동산 소계			
총계		50,000,000원	